

#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청원번호 : 제24호
- 청 원 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서울우이유치원 비상대책위원장 송은주 외 4,174명
- 소개의원 :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접수일자 : 2020년 6월 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9일

## II. 청원요지

- 현재 추진 중인 우이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강북구 영유아 및 취학 아동들이 보다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청원함.

##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강북구는 극심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영유아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강북구 어린이집(국공립·민간)의 충원율이 85%에 그치고 있고, 유치원(사립·병설·법인)은 충원율이 7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강북구 우이동에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86억원 규모의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6월 착공을 앞두고 있음.

기존 보육시설을 통해 영유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인프라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우이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강북구 영유아 및 취학 아동들이 보다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청원함.

####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0년 6월 8일 이상훈 의원의 소개로 송은주 외 4,174명 으로부터 청원번호 제24호로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강북구 우이동에 우이유치원(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기존 영유아 보육시설의 인프라 낭비를 초래하고 불평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이유치원의 설립을 중단하고 강북구 영유아 및 취학아동들이 보다 보편적 교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강북지역 내 우이유치원 설립 추진 경과

- 가칭)서울우이유치원(이하 ‘우이유치원’) 신설의 건은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우이초등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여 2020년 9월까지 10학급(특수2학급 포함) 176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해당지역은 유아수용계획상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3.6% 미만에 불과하고 사립유치원 정원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유아수용률도 38.1% 에 지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유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우이유치원 신설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표-1] 성북강북 1권역 유치원 취학수요**

(단위 : 명, %)

구분	취학권역	취원대상 유아수 ①	유치원 정원 <sup>②</sup> (유아수용률)			취학수요 <sup>③</sup>			과부족 <sup>④</sup> = <sup>②</sup> - <sup>③</sup>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우이유	성북강북1	1,795	64 (3.6)	620 (34.5)	684 (38.1)	910	386	1,296	△846	234	△612

**[표-2] 우이유 신설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유치원명	공유재산심의	자체재정투자심사 (40억이상)	중앙투자심사 (100억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우이유	원안가결(2019.5.)	적정(2019.3.)	적정(2019.4.)	원안가결(2019.6.)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 우이유치원 신설예산 8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이 완료(2020.5.)되었으며, 현재 토목공사가 착공(2020.6.) 예정에 있습니다.

**[표-3] 우이유 신설 관련 예산 현황**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목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9	학교신증설	건설비 [420]	<b>8,629,702</b>	12,000	8,616,090	1,612 (낙찰차액)	- 명시이월: 8,224,702 - 사고이월: 391,388 - 지출내역: 설계비 등
2020	학교신증설	건설비 [420]	8,616,090	4,290			

## [표-4] 우이유 신설 관련 추진 경과

일 별	협 의 내 용
2018. 11.	유치원 설립 신청서 제출(학교→교육지원청)
2019. 3.	2019년 제2회 자체재정투자 심사: 적정
2019. 4.	2019년 정기1차 중앙 재정투자 심사: 적정
2019. 5.	2019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019. 6.	2019년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우이유 원안가결
2019. 7.	2019년 제1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 확정
2019. 8.	공공건축 사전설계 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11.	설계공모 당선자 결정 및 설계용역
2020. 4.	우이유 설립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공립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근 유아시설 운영 어려움 및 교직원 실직 등 부정적 의견 다수 ※ 의견제출자: 인근 유아시설 관계자 46.9%, 소속미기재 52.1%
2020. 5.	설계용역 완료 및 토목공사 발주
2020. 6.	토목공사 착공계정

## [그림-1] 우이유 신설 위치 현황도



<설립위치>



<조감도>

### 나. 우이유 신설에 대한 의견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성북강북1 취학권역<sup>1)</sup>은 공립유치원이 수유초병설유치원(4학급, 39명<sup>2)</sup>) 1개만 존재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1) 성북강북1취학권역(행정동 기준) : 수유1~2동, 우이동, 인수동

7개원(387명), 어린이집은 29개원(1,225명)이 운영 중에 있는바  
 ([붙임]참조), 동 청원은 기존 시설만으로도 강북구 영유아의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우이유치원 신설이 적정하지 않고,

우이유치원 신설시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없이 추진되  
 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우이유치원의 신설예정지인 강북구는  
 영유아수가 감소되고 있어 동 지역에 대한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세  
 금낭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5] 우이유 신설 관련 민원 현황**

일시	구분	주체	내용
2019. 2. ~2020. 5	지원청 항의 방문 (5회)	어린이집 연합회	우이유 설립 및 설계 단계에서 관내 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 및 의견 수렴 요청 - 유치원 설립 반대 - 개원시기 연기, 학급수 조정(규모 축소) - 각종 지원센터 등 대체시설로 전환 요청 (특수유아 대상 시설 등)
2019. 11.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	이상훈 시의원	강북구 출산율 저하 및 유아시설 과다로 인한 유치원 설립 타당성 재고 요청
2020. 4.	온라인설명회 의견 회신	인근 유아시설 관계자 등	공립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근 유아시설 운영 어려움 및 교직원 실직 등 부정적 의견 다수
2020. 5.	구청장 면담	어린이집연합회 및 사립유 대표	유치원 설립 반대 ※ 구청 답변: 해당 사항에 대한 권한 없음

○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성북강북1 취학권역의 경우 단설  
 유치원이 없어 유아 기관별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학부모의 공  
 립유치원 취학수요(60.5%)를 고려할 때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정투자심사 및 시의회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2) 수유초병설유는 4학급(특수학급 1포함) 64명 정원임에 현원이 39명에 불과한바, 이는 만4세, 만5세 학  
 급의 경우 10명씩 총 20명만 방과후 과정인 에듀케어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사업으로 타 용도로의 계획 변경 및 타 기관 병설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표-6] 성북강북 1권역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현황**

연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취원 유아수	공립희망 유아수	공립 수요	취원 유아수	공립희망 유아수	공립 수요	취원 유아수	공립희망 유아수	공립 수요	취원 유아수	공립희망 유아수	공립 수요
2019	626	322	51.4%	563	273	48.5%	565	295	52.2%	<b>1,754</b>	<b>890</b>	<b>50.7%</b>
2020	550	344	62.5%	626	406	64.9%	563	306	54.4%	<b>1,739</b>	<b>1,056</b>	<b>60.5%</b>

○ 이처럼 지역 유아보육·교육기관과 서울시교육청은 우이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설립예정 유치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유아보육기관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정원의 축소 및 특수학급 증설 등의 방안도 고려중에 있는바, 우이유치원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성북강북1취학권역 내 유아시설 현황

유형	행정동	시설명	주소	학급수	원아수	비고
공립유	수유1동	수유초병설유치원	삼양로74길 39	4	39	특수1
<b>공립 계(1개원)</b>				<b>4</b>	<b>39</b>	
사립유	수유2동	성실유치원	삼각산로143-1	5	83	
사립유	수유2동	성체유치원	삼각산로161	5	95	
사립유	인수동	신극동유치원	인수봉로260	3	49	
사립유	수유1동	운산유치원	수유로4길58 2층	2	37	
사립유	우이동	유안유치원	인수봉로297	3	57	
사립유	우이동	인수유치원	인수봉로298	1	20	
사립유	인수동	화계유치원	덕릉로45	3	46	
<b>사립유 계(7개원)</b>				<b>22</b>	<b>387</b>	
어린이집	수유2동	구립삼성어린이집	한천로159길 8	2	21	
어린이집	인수동	구립송암어린이집	삼양로 357	2	33	
어린이집	수유1동	구립수유1동어린이집	인수봉로38가길 28	3	41	
어린이집	수유2동	구립수유2동어린이집	삼양로138길18	2	21	
어린이집	우이동	구립오렌지어린이집	삼양로123길10-21	1	14	
어린이집	우이동	구립우이동어린이집	삼양로159가길 7	3	46	
어린이집	인수동	구립인수동어린이집	삼양로107길46	5	85	
어린이집	우이동	구립참행복한어린이집	인수봉로84길34-14	1	16	특수유아
어린이집	인수동	꽃길어린이집	인수봉로52가길42	2	19	
어린이집	우이동	꿈꾸는어린이집	삼양로173가길58	2	16	
어린이집	수유1동	꿈나무어린이집	삼양로85길4	1	18	특수유아
어린이집	수유1동	나나어린이집	수유로4길23	6	90	
어린이집	수유2동	나이팅게일어린이집	노해로23길95	3	43	
어린이집	수유2동	동화나라어린이집	노해로27길48	5	76	
어린이집	인수동	백운교회어린이집	인수봉로77길10	3	54	
어린이집	수유1동	새롬어린이집	수유로4길35	1	14	
어린이집	수유1동	솔로몬소망어린이집	삼양로324	1	9	
어린이집	수유1동	솔로몬영재어린이집	삼양로77길43-6	4	64	
어린이집	우이동	솔밭어린이집	삼양로149길12	4	67	
어린이집	수유1동	신기어린이집	삼양로79길12	9	141	
어린이집	우이동	아이꿈터어린이집	삼양로149가길17	2	33	
어린이집	수유2동	아이스타어린이집	삼양로114길14	3	44	
어린이집	수유2동	양팡어린이집	삼양로118길10-7	2	22	
어린이집	우이동	예술어린이집	삼양로139나길33	1	15	
어린이집	우이동	제일어린이집	삼양로163길63	6	109	
어린이집	수유2동	조은어린이집	노해로25길62	2	23	
어린이집	수유2동	코코어린이집	삼양로112길9	1	8	
어린이집	수유2동	푸른솔어린이집	한천로155길38	3	41	
어린이집	우이동	한돌어린이집	삼양로163길15	3	42	
<b>어린이집 계(29개원)</b>				<b>83</b>	<b>1,225</b>	
<b>합계 (37개원)</b>				<b>109</b>	<b>1,651</b>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20. 1. 2.] [서울특별시규칙 제3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